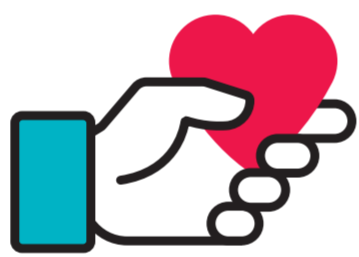


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



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

고향사랑 기부제

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
고향사랑 기부제
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.

고향사랑기부제는?

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(기초·광역)에
기부하면,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
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
(기부 한도 : 연간 최대 500만 원)

기부자 혜택

- 세액공제 : 10만원까지는 전액, 10만원 초과 금액은 16.5%
- 답례품 : 기부금의 30%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

기부금 사용처

주민복지 증진사업 : 취약계층 지원, 청소년 보호,
문화·예술·보건 증진,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